

# 공용건축물 협의 조건

[정릉동 771-7]



성북구청  
건축과

# 건축 허가 조건

## □ 건축 과

[정보통신공사 안내사항]

- 공사완료 시, 해당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대상 건축물입니다.
-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맨홀(핸드홀)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성품(수공1호) 사용바랍니다.(건축주 동의 시 콘크리트타설 가능)
- 원활한 지중인입을 위해 대지경계 또는 KT전주까지 3공 이상의 지중인입배관을 설치바랍니다.
- 가공선로 인입관로에 누수방지를 위해 서비스캡(우에샤캡)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의 신축, 증축, 개축 시에는 인허가 전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구내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T.02-317-6030)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만 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전에 견본 주택에 사전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 치 수 과

- 일일발생오수량이 10㎡ 이상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개산금 : 63,392,940원) 부과대상이며, 기타 불임문서와 같이 하수분야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하수분야 협의조건 및 기존 배수설비 폐쇄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하수분야 협의조건 1부.  
2. 배수설비 폐쇄 안내서 1부.

## □ 청소행정과

- 하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설계시공업 등록한 자가 설치기준(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및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2015.07.31.)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

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합니다.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부.

## □ 도시재생디자인과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적정하게 설치바랍니다.

## □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설치시에는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3. 비산먼지발생사업)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인 경우, 착공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 착공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크(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8(오염토양의 정화)  
: 정릉동 771-7 소재의 부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19. 2.14.까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완료하여야 함.

### <정화방법>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고, 오염정화공사 착공 7일전까지 성북구청(환경과)에 오염토양 정화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함.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 세차시설 1일 최대 폐수량이 0.1<sup>m</sup>이상일 경우,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설치 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시계획관련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입지제한이 없을 경우 설치 가능)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 운수장비 정비시설(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

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경우, 「물환경보전법」제60조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기타수질오염원 조치사항>**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을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도로과**

- 불임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건축허가 시 도로분야 일반승인조건 1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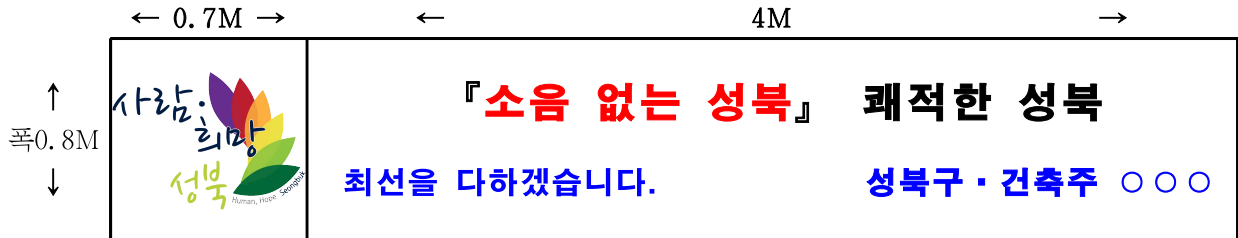
서울시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유형별 설치방안 1부.

## 차 례

|   |     |
|---|-----|
| 1. 건축허가 안내문 .....                             | 2쪽  |
| 2. 관련 서식 및 세부 안내                              |     |
| [첨부 1] 건축공사 가설시설물 설치기준 .....                  | 7쪽  |
| [첨부 2] 건축공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                 | 9쪽  |
| [첨부 3] 건축허가 표지판 .....                         | 10쪽 |
| [첨부 4]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             | 11쪽 |
| [첨부 5] 건축물 소유주 및 해체·제거업자가 알아야 할 석면관리 제도 ..... | 12쪽 |
| [첨부 6]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 13쪽 |
| [첨부 7]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 14쪽 |
| [첨부 8] 배수설비 준공검사조서 .....                      | 16쪽 |
| [첨부 9] 구인신청서(상용) .....                        | 17쪽 |
| [첨부10] 정화조 공기주입 장치 설치 안내문 .....               | 20쪽 |
| [첨부11]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설치 권고 .....                 | 22쪽 |
| [첨부12]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 .....                  | 23쪽 |
| [첨부13] 급수설비 검사관련 업무 흐름도 .....                 | 26쪽 |
| [첨부14] 급수설비 설치 신고서 .....                      | 27쪽 |
| [첨부15]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이행조건 .....                  | 28쪽 |
| [첨부16] 안전점검표 .....                            | 29쪽 |
| [첨부17]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안내 .....                | 31쪽 |
| [첨부18] 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 32쪽 |
| 3. 하수분야 허가조건 .....                            | 34쪽 |
| 4. 도로분야 허가조건 .....                            | 40쪽 |
| 5. 급수분야 허가조건 .....                            | 43쪽 |

# 건축허가 안내문

공사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착공신고 시 기존건축물을 철거 신고하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계획서 등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철거는 착공신고 후 지하터파기 안전시설 설치 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공신고 시 모든 건축공사장(철거공사장 포함)은 건축공사 가설시설물 설치기준(첨부1)에 적합하도록 설치계획서(첨부2)를 작성하시고, 현장에 가설울타리 및 건축허가표지판(첨부3)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암반굴착을 시행하는 공사장은 반드시 방음판(가설스틸·플라스틱 방음판 등 사용, 높이 3M이상, EGI휨스합판 등은 사용금지) 및 방음집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 후 현장 반입하고, 재사용 가설기자재인 경우 변형, 마모, 손상, 부식 등으로 품질 저하와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안전성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3. 착공신고 시 미관도로변, 폭10m이상 도로변, 성북천 하천복원 사업구간 및 연면적 2,000 m<sup>2</sup>이상으로 폭 8m이상 도로변에 접한 신축대상 건축물은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설치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구 건축(디자인) 심의를 받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시고, 설치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성북구청 도시환경국 홈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일반자료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ngbuk.go.kr/newtown/design/library/Index.jsp>)]
4. 건축공사를 수반한 굴착공사는 지하매설물(가스·수도·전기·전화 등)을 사전에 현장조사 하여 이전 및 안전보호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한진·극동도시가스, 성북수도 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성북지점)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후 공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축·개축·대수선·철거 시작 7일 전 굴착공사 시 1일전까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유선 1644-0001 또는 홈페이지 <http://www.eocs.or.kr/>)에 신고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스코 북부안전팀(☎ 2210-7510)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철거 등 공사를 할 경우 도시가스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강화된 도시가스 안전관리 주요내용(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 건축물을 증축·개축·철거 등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
-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조치 협의서 작성 및 이행

나. 위반시 행정처분(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착공신고 시 건축주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및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성립통지서 또는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축 부지 인근 전력선에 건축용 방호관을 부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 배전운영팀 ☎901-4272, 접수 ☎901-4227)

9. 모든 건축물은 특고압 전연전선과 축방이격거리 1M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동 거리 미 확보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건축용 방호관 취부 또는 이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4)

11. 사용승인신청 시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설비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는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용승인신청 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 동부지사 ☎2217-8611~3)로부터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3. 최초 수직구조재 완료시 이해관계인(인근주민 등)입회하에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변경 측량 포함)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또는 구청장 요구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도시경관향상과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오니 건축공사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옥상녹화 시에는 구조 및 방수, 방근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공원녹지 ▷ 공원관련자료 55번 ([http://env.seoul.go.kr/material\\_main/84?pageno=2](http://env.seoul.go.kr/material_main/84?pageno=2))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참조]
15. 1일 2톤 이상(월 60톤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시 20일 이내에 우리구 안전치수과 기전관리팀(☎920-175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첨부한 석면관리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5)(첨부6)
17.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출 시 배수설비 설계도(평면도, 입면도) 및 체크리스트(첨부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의 배수설비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신청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조서(첨부8)』를 작성하여(감리자 확인·사진 및 도면첨부) 우리구 안전치수과를 사전 경유하여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고시원)인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 구에서는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찾는 구민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당해 건축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고용 시 우리 구민을 우선 고용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구인표(첨부9)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 주시면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구인·구직자를 매치하여 드립니다.]
20.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건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강제배출시 공공하수도 맨홀에서 악취발생 물질(황화수소)이 5ppm 이내로 발생하도록 공기주입장치(첨부10) 또는 동등한 효과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복합건물 내 주택 등 신규주택 신축 시 소화기구,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시고 사용승인신청 시 설치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4. 사용승인신청 시 정화조준공조서, 정화조관리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신축 건물은 열효율 87% 이상이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0ppm 이하인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설치를 권장합니다.(첨부11)
26.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같은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한 부분은 인접한 도로와 같은 재질 등으로 포장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현장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설치 시에는 공사 전 우리 구(도로시설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 차량출입시설 포장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첨부12)
28.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급수가 필요한 시점 30일 이전에 일반수도사업자 (해당 수도사업소) 에게 제출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첨부13)(첨부14)
29. 원룸 신축 시(월곡·종암·장위·석관동)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아래 시설물을 설치하시고, 「원룸 방범인증」 (종암경찰서 생활안전과 ☎925-0340)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15)

| 연 번 | 평가 항목 (5개)   | 평가 배점 (100점) |
|-----|--|--------------|
| 1   | 각 세대 출입문은 인증된 방법문 설치<br>※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 20           |
| 2   | 외벽 가스배관 매립<br>※ 가스배관에 가시형 철조망 설치도 가능                                       | 20           |
| 3   | 건물 입구에 출입문 및 조명 설치<br>※ 건물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한 전자기가 부착된 문 설치                   | 20           |
| 4   | 외벽 창에 방범창살 설치<br>※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 20           |
| 5   | CCTV 및 안내판 설치<br>※ 건물 현관 입구 1개, 층간 사이(또는 각층 복도) 1개씩, 건물 주변 사각지대 1개, 주차장 1개 | 20           |

30. 굴착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공사 시, 감리자는 안전점검을 2회(흙막이공사완료 후, 굴착공사완료 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첨부16)
-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단면상세도, 지하매설물현황도, 시방서(흙막이공법 등), 흙막이 설계도서, 지반조사보고서 및 인접 석축·옹벽·담장·노후 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 대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깊이가 1.5m 미만인 경우(지하층이 없더라도 동결심도 이하까지 굴착하는 경우 포함),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단면상세도, 지하매설물현황도 및 인접 석축·옹벽·담장·노후 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 대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굴토심의 및 사용승인 신청 시(굴토심의대상) 굴토공사장에 대한 지반조사 부실방지와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첨부17)을 참조하여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 표지와 관련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시행 시 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측량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이 예상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우리구 지적과(☎ 2241-4657)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망실·훼손된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전에 기준점 복구비용을 납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32. 굴착공사와 관련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기 기상예보(10일 예보)를 참고하여 굴착공사를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안전헬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도로굴착 준공확인 신청 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와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규 도로굴착복구 허가 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도로과(☎ 2241-3553)

(첨부1)

# 건축공사 가설시설물 설치기준

## □ 설치대상

- 모든 건축물의 건축공사장(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 □ 설치기준

### 1. 공사안내표지판(양식 : 첨부3)

-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안내판에 표기하여야 할 내용
  - 건축주·시공사·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인적사항
  - 공사규모, 공사예정기간, 도로점용면적
  - 시민불편민원 신고 부서(부서 명, 전화번호 등)
    - ※ 기타 안내사항(선택)
- 설치규격
  - 20m이상 도로변 : 가로 0.9m, 세로 1.3m이상
  - 20m미만 도로변 : 가로 0.6m, 세로 0.9m이상
    - ※ 조감도 부착 등 현장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2. 가설울타리(현장 펜스) 설치

#### ▶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적용 범위                                | 설치 기준   | 비 고 |
|--------------------------------------|---|-----|
| 20m이상 도로 또는<br>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단순 미려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상</li> <li>- 도안 : 가급적 홍보용 회사로고 표시를 지양하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그래픽</li> <li>- 설치규격 : 높이 3m이상(풍압에 견디도록 철재 등 보강)</li> <li>- 재질 : 철재 및 플라스틱 방음재 등 양호한 재질</li> <li>- 보행인 안전통로 확보 : 폭 1.5m 이상, 높이 2.1m 이상 통행에 불편<br/>이 없도록 일정 폭과 높이 확보 및 상부 보호시설은 동일재료로 연속<br/>된 형태 설치</li> </ul> |     |
| 6m이상 도로변<br>건축공사장 (연면적<br>5,00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이상 도로변 건축공사장 기준에 준하여 설치(단, 높이 2.4m<br/>이상)</li> </ul>   |     |
| 6m이상 도로변<br>건축공사장 (연면적<br>5,000㎡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및 도안은 소형공사장인 점을 감안하여 자율설치</li> <li>- 설치규격 : 높이 1.8m이상(풍압에 견디도록 철재 등 보강)</li> <li>- 재질 : EGI 흰스 및 플라스틱 방음재 등 양호한 재질</li> </ul>   |     |
| 6m미만 도로변<br>건축공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m이상 도로변 건축공사장(연면적 5,000㎡ 미만) 기준에 준하여 설치토<br/>록 권장</li> </ul>  | -   |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건축공사장은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함.

#### ▶ 가설울타리 벽면도안 기준(안)

{본 가이드라인은 성북구청 도시환경국 홈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일반자료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ngbuk.go.kr/newtown/design/library/Index.jsp>)}

### 3. 공사장 주변 보행인 안전통로(보도상)

-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폭과 높이를 유지하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서울시 도시디자인 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

- 폭 : 1.5m이상, 높이 : 2.1m이상
- 보행통로 상부에 설치되는 보호시설은 동일재료로 연속된 형태유지

#### 4.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 구 성 : 외부비계, 방호선반(수평 낙하물방지망)
  - 도심지와 같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방호선반 설치
- 재 료 :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적합한 것 사용
- 외부비계 : 기둥 및 띠장의 간격은 수직재 간격은 1.8m 이하, 수평재 간격은 1.5m 이하로 하되 첫 단의 높이는 2m 이하, 벽체 고정용 이음대는 수직, 수평 5m간격이내, 벽에서 30~50cm이내 설치
- 방호선반(수평 낙하물방지망) : 구조 및 재질은 낙하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 설치높이는 첫단은 8m이내에 설치하고 매 10m 마다 설치,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이내, 내민 길이는 구조체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

#### 5. 양중기(크레인 등) 설치

- 양중기 관리책임자 지정(설계·시공·관리·해체로 구분)
- 작업반경이 공사장내로 국한되도록 설치(JIB-CRANE 등 권장)
- 공사장을 벗어나는 크레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규제

#### 6. 공사용 건축물 가림막 시설 설치

-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건축물 가림막 시설은 가급적 회색으로 표시를 지양하고 주변건물과 조화되고 미려한 밝은 색상으로 설치하되, 공사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공사장 외부로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 재료 :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규격의 고품의 조립식제품 사용권장
- 시공 : 바람 등 반복외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 내력관계 고려

#### 7. 자재 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 공사장 내에 자재 반입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이 협소할 경우에만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이내)를 받아 확보하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
  - ※ 공사차량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확보 권장

#### 8. 공사장 진·출입구 설치

- 출입문은 가설울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동일재질로 하되 구조적으로 미려하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개폐가 자유롭게 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와 공사용 차량 출입이 없는 경우는 견고히 닫도록 운영
- 교통 및 보행자안전을 감안한 최적위치에 설치
- 설치개소 : 2개소 이내(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1개소)

(첨부2)

| <h2 style="text-align: center;">건축공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h2>  |  |  |              |  |              |            |                           |
|--|--|--|--------------|--|--------------|------------|---------------------------|
| <b>건 축 개 요</b>   | <b>대지위치</b>  |  |              |  |              |            |                           |
|  | <b>대지면적</b>  |  | <b>지역·지구</b> |  | <b>층수</b>    |            |                           |
|  | <b>건축면적</b>  |  | <b>구 조</b>   |  | <b>용도</b>    |            |                           |
|  | <b>연 면 적</b>   |  | <b>층 수</b>   |  | <b>도로현황</b>  | m이상 도로     |                           |
| <b>설치계획 대상</b>   | <b>세 부 계 획</b>   |  |              |  | <b>적정 여부</b> | <b>비 고</b> |                           |
| <b>공 사 안 내 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위치(일반인이 잘 볼수 있는 위치) 및 설치사진</li> <li>조감도 부착등 현장여건에 따라 확대가능</li> </ul>  |  |              |  |              |            |                           |
| <b>가설 울타리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상유지)</li> <li>규격 : 20m이상 도로변(높이 3m 이상), 6m이상 도로변, 연면적 5,000㎡ 이상 (높이 2.4m 이상) 6m이상 도로변, 연면적 5,000㎡ 미만 (높이 1.8m 이상) 6m미만 도로변 (높이 1.8m 이상 설치 권장)</li> <li>재질(steel 조립식, 플라스틱 방음재등)</li> </ul>  |  |              |  |              |            |                           |
| <b>공 사 장 주 변 보행인 안전통로 설치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 폭과 높이유지(폭 : 1.5m이상, 높이 : 2.1m이상)</li> <li>보행통로 상부에 설치되는 보호시설은 동일재료로 연속된 형태유지</li> </ul>   |  |              |  |              |            |                           |
| <b>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 외부비계, 방호선반(수평 낙하물방지망)</li> <li>재료 :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적합한 것 사용</li> <li>외부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둥 및 띠장의 간격 : 수직재 간격은 1.8m 이하, 수평재 간격은 1.5m 이하로 하되 첫 단의 높이는 2m 이하</li> <li>·벽체 고정용 이음대 : 수직, 수평 5m간격이내</li> <li>·벽에서 30~50cm이내 설치</li> <li>·방호선반(수평 낙하물방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 및 재질 : 낙하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li> <li>·설치높이 : 첫단은 8m이내에 설치하고 매 10m 마다 설치</li> <li>·수평면과의 경사각도 : 20~30° 이내</li> <li>·내민길이 : 구조체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 구성</li> </ul> </li> </ul> </li> </ul> |  |              |  |              |            | 보행자와 차량의통행이 빈번한 곳은 방호선반설치 |
| <b>양중기(크레인등)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중기 관리책임자 지정(설계·시공·관리·해체로 구분)</li> <li>작업반경이 공사장내로 국한되도록 설치(JIB-CRANE 등을권장)</li> <li>공사장을 벗어나는 크레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득할것</li> </ul>   |  |              |  |              |            |                           |
| <b>건 축 물 가림막 시설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건물과 조화되고 미려한 밝은 색상으로 설치, 공사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공사장 외부로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토록 설치</li> <li>재료 :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규격의 고품의 조립식제품 사용</li> <li>시공 : 바람 등 반복 외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 내력관계 고려</li> </ul>  |  |              |  |              |            |                           |
| <b>자재반입 및 저장 시설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장내에 자재 반입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이 협소할 경우에만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이내)를 받아 확보하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li> <li>※ 공사차량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확보 권장</li> </ul>   |  |              |  |              |            |                           |
| <b>공 사 장 진·출입구 설치 계획</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문은 가설울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동일재질로 하되 구조적으로 미려하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개폐가 자유롭게 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와 공사용 차량 출입이 없는 경우는 견고히 닫도록 운영</li> <li>설치개소 : 2개소 이내(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1개소)</li> </ul>  |  |              |  |              |            | 교통 및 보행자안전을 감안한 최적 위치에 설치 |
| <p>상기 가설공사장계획에 따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 안전준수 및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                         건축주 (인)<br/>                         시공자 (인)<br/>                         감리자 (인)                     </p> |  |  |              |  |              |            |                           |
| <p><b>성 북 구 청 장 귀하</b></p>   |  |  |              |  |              |            |                           |



##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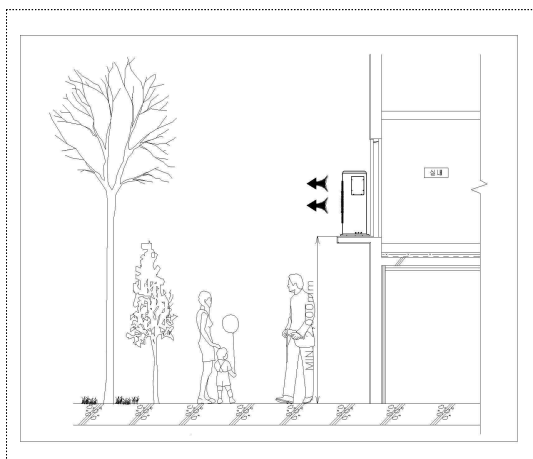
### 《 관련 규정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제3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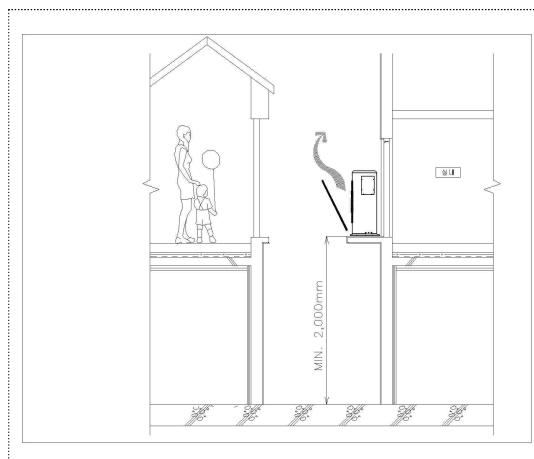
-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1차:시정명령, 2차: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음.

### [ 그림 예시 ]



실외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실외기 열기 차단막 설치



## 건축물 소유주 및 해체·제거업자가 알아야 할 석면관리 제도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포함]

### 1 석면조사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철거, 철설, 리모델링, 대수선, 용수, 개수, 개수 등의 모든 작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자, 계약자, 계약자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 택 (□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인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설 비 :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및 방법**

석면조사 대상 중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의 4

석면조사 생략사유

설계도서, 지적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②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노동부에서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 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진물주는 석면조사

석면해체는 등록업체에게

등록업체는 작업신고 및 기록출수

등록업체는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자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을 함유하지 않음이 명백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음이 명백

석면조사생략대상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지정노동감시에게 제출

확인·검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2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체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정노동감시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음

**구분**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      |   |
|------|---|
| 인력요건 |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도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직법」에 따른 관련 종류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 시설요건 |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도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 장비요건 | ① 고성능물리탐색기(PTA) 필터가 장착된 흡입기<br>② 용접기 용접 장치<br>③ 고성능물리탐색기(PT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br>④ 위생설비(의복, 샤워실, 작업복, 경의술이 설치된 샤워실) 이동식 포함<br>⑤ 송기마스크 또는 진동식 방진마스크 등 ⑥ 흡입장치 |

**3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정노동감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사고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신고서 제출
- 작업시 작업기준 준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 하여야 합니다.
- 9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공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작업시에도...**

- 건축물 등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등록 및 비등록업체 모두 해당)는 통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자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 석면이 포함된 경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해체·제거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영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 측정자의 자격   | 측정 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 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li> <li>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방수)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 위험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측정</li> </ul>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
| 신고번호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   |    | 처리기간 | 7 일     |
| [ ] 건축물                             | 위치(소재지)           | 건축물등록번호                                       |    |      |         |
|                                     | 용도                | 건물명(설비명)                                      |    |      |         |
| [ ] 설비                              | 건축물수              | 구조  |    |      |         |
|                                     | 세대수               | 연면적   |    |      |         |
| 소유자                                 | 성명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자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
|                                     |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작업장                                 | 공사현장명(공사명·작업명)    |   |    | 전화번호 |         |
| 해체사유                                | 해체사유              |   |    |      |         |
|                                     | 해체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석면함유<br>자재(물질)<br>의 종류 및<br>면적      | 종 류               | 면적(m <sup>2</sup> )·부피(m <sup>3</sup> )·길이(m) |    |      |         |
|                                     | 분무재(뿜칠재)          |   |    |      |         |
|                                     | 내화피복재             |   |    |      |         |
|                                     | 천장재               |   |    |      |         |
|                                     | 지붕재               |   |    |      |         |
|                                     | 벽재(벽체의 마감재)       |   |    |      |         |
|                                     | 바닥재               |   |    |      |         |
|                                     | 파이프보온재            |   |    |      |         |
|                                     | 단열재               |   |    |      |         |
|                                     | 개스킷               |   |    |      |         |
|                                     |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         |
| 현장책임자                               | 성명                |   |    | 전화번호 |         |
| 작업근로자<br>인적사항<br>(칸이 부족할 경<br>우 별첨)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7)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배수설비 설치신고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구 분   | 확인내용                      | 확인결과            |            |           |            |     |   |
|---|---------------------------|-----------------|------------|-----------|------------|-----|---|
| ○ 신고서   | ○ 신고서 양식 적정 여부            | 여               |            |           | 부          |     |   |
|   |                           |                 |            |           |            |     |   |
|   | ○ 기재내용 누락 여부              | 여               |            |           | 부(누락항목 기재) |     |   |
|   |                           |                 |            |           |            |     |   |
|   | ○ 시공자 기재여부                | 상 호             | 자 격 종 목    |           | 등 록 번 호    |     |   |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 발생수량(설치신고서 하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산정 적정여부                | 적 정                       |                 |            | 부적정(내용기재) |            |     |   |
|   |                           |                 |            |           |            |     |   |
| ○ 수량 및 수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상인지 여부 (이상인 경우 ⑭, ⑮번 항목 작성 여부) | 이 상                       |                 |            |           |            | 이 하 |   |
|   | 사용시작란 기재                  |                 | 사용시작란 미 기재 |           |            |     |   |
|   |                           |                 |            |           |            |     |   |
| ○ 설계서   | ○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여부          | 여               |            |           | 부          |     |   |
|   |                           |                 |            |           |            |     |   |
|   | ○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확보 여부 | 여               |            |           | 부          |     |   |
|   |                           |                 |            |           |            |     |   |
|   | ○ 표시내용 누락 및 적정 여부         | 구분              | 누락 및 적정 여부 |           |            |     |   |
|   |                           |                 | 여          |           | 부          |     |   |
|   |                           | 배수설비관경          |            |           |            |     |   |
|   |                           | 배수설비관종          |            |           |            |     |   |
|   |                           | 배수설비연장          |            |           |            |     |   |
|   |                           | 배수설비 매설경사(유속)   |            |           |            |     |   |
|   |                           | 부지내 배수설비 최소 토 피 |            |           |            |     |   |
|   |                           | 건물 부지고          |            |           |            |     |   |
|   |                           | 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    |            |           |            |     |   |
|   |                           | 공공 하수관 상·하류 관저고 |            |           |            |     |   |
|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                           |                 |            |           |            |     |   |
| - 천공이격거리  |                           |                 |            |           |            |     |   |
| - 연결용 자재  |                           |                 |            |           |            |     |   |
| ○ 신고서와 설계서  | ○ 상호 내용 일치여부              | 여               |            |           | 부(불일치 항목)  |     |   |
|   |                           |                 |            |           |            |     |   |

○ 배수설비 준공검사 걱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구 분  | 검사내용                       | 검사결과                  |            |         |     | 확인결과  |   |
|--|----------------------------|-----------------------|------------|---------|-----|-------|---|
|  |                            | 여                     |            | 부       |     | 여     | 부 |
| ○ 준공검사 신청서   | ○ 법정 양식 사용                 |                       |            |         |     |       |   |
| ○ 시 공 자  | ○ 신고서상의 실시공자               | 상 호                   | 자 격 종 목    | 면 허 번 호 |     | 여     | 부 |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 ○ 최종 설계서 (설치신고서와 변경이 없을 경우 검토 제외)                                      | ○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             | 여                     |            | 부       |     | 여     | 부 |
|  | ○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여부 | 여                     |            | 부       |     | 여     | 부 |
|  |                            |                       |            |         |     |       |   |
|  | ○ 표기내용                     | 구 분                   | 누락 및 걱정 여부 |         | 적 정 | 부 적 정 |   |
|  |                            |                       | 여          | 부       |     |       |   |
|  |                            | 배수설비관경                |            |         |     |       |   |
|  |                            | 배수설비관종                |            |         |     |       |   |
|  |                            | 배수설비연장                |            |         |     |       |   |
|  |                            | 배 수 설 비 매설경사(유속)      |            |         |     |       |   |
|  |                            | 부 지 내 배 수 설 비 최 소 토 피 |            |         |     |       |   |
|  |                            | 건물 부지고                |            |         |     |       |   |
| 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   |                            |                       |            |         |     |       |   |
| 공공 하수관 상 하 류 관 저 고   |                            |                       |            |         |     |       |   |
|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                            |                       |            |         |     |       |   |
| - 천공 이격거리  |                            |                       |            |         |     |       |   |
| - 연결용 자재   |                            |                       |            |         |     |       |   |
| ○ 검사항목 (최종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br><br>※ 확인자는 설계서와 시공상필요시 현장확인 및 감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 | ○ 시공의 걱정 여부                | 구 분                   | 시공의 걱정 여부  |         | 적 정 | 부 적 정 |   |
|  |                            |                       | 여          | 부       |     |       |   |
|  |                            | 배수설비 연결부              |            |         |     |       |   |
|  |                            | 배수설비 경사               |            |         |     |       |   |
|  |                            | 배수설비 관경               |            |         |     |       |   |
|  |                            | 배수설비 재질               |            |         |     |       |   |
|  |                            | 오수, 우수 분리배관           |            |         |     |       |   |
|  |                            | 오접 여부                 |            |         |     |       |   |
| 기타 상기 신고 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                            |                       |            |         |     |       |   |

(첨부 8)

## 배수설비 준공검사조서

|                    |   |   |    |    |             |         |                           |
|--------------------|---|---|----|----|-------------|---------|---------------------------|
| 건축주                | 회 사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         |                           |
| 시공자                | 법 인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         |                           |
| 배수설비현황             | 설 치 위 치   | 성북구 동 가 번지 호                            |    |    |             |         |                           |
|                    | 관 종   |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 |    |    |             |         |                           |
|                    | 관 경   | φ                                       | mm | 연장 | m           | 접속방법    |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 )에 접속 |
| 준공<br>검사<br>항<br>목 | 검 사 항 목   |   |    |    |             |         | 검사자(감리자) 확인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   |    |    |             |         |                           |
|                    |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   |    |    |             |         |                           |
|                    | 3. 배수설비 공공하수관 중심선 위쪽에 연결되었는지 여부                                 |   |    |    |             |         |                           |
|                    | 4. 배수설비 하수흐름방향(60~90° ) 적정 연결여부                                 |   |    |    |             |         |                           |
|                    | 5.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    |    |             |         |                           |
|                    | 6. 오수, 우수 분리배관여부  |   |    |    |             |         |                           |
|                    | 7.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   |    |    |             |         |                           |
|                    | 8. 공사로 인한 주변 빗물받이 손상 및 빗물받이 퇴적상태 확인                             |   |    |    |             |         |                           |
|                    | 9. 공공하수도 천공, 단지관 사용여부   |   |    |    |             |         |                           |
| 검<br>사<br>자        | 소 속   |   |    |    | 직 위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성 명         |         |                           |
|                    |   |   |    |    | 치수과<br>확인   | 확인항목 9번 |                           |
|                    |   |   |    |    | 설치여부 :      |         |                           |
|                    |   |   |    |    | 확 인 자 : (인) |         |                           |

※ 첨부서류

- 배수설비 설치시공 전, 중(천공), 후(단지관사용) 사진 각 1매.
- 배수설비 설계도면 1부.

(첨부 9)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 구인신청서(상용)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

|        |     |     |          |
|--------|-----|-----|----------|
| 구인인증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일 |
|--------|-----|-----|----------|

|           |                  |   |          |      |  |     |       |     |
|-----------|------------------|---|----------|------|--|-----|-------|-----|
| 업체현황      | ①사업체명(*)         |   | 지사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     |       |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     |       |     |
|           | 업종(*)            |   | ③사업내용(*) |      |  |     |       |     |
| ④근로자 수(*) |                  | 총 | 명        | ⑤자본금 |  | 백만원 | 연 매출액 | 백만원 |

|  |   |        |  |                  |         |          |  |  |   |
|--|---|--------|--|------------------|---------|----------|--|--|---|
| 구인사항   | ⑥채용제목(*)  |        |  |                  |         |          |  |  |   |
|  | 모집직종(*)   |        |  |                  | 모집인원(*) |          |  |  | 명 |
|  | 직무내용(*)   |        |  |                  |         |          |  |  |   |
|  | 학력(*)   | [ ] 이상 |  | [ ] 관계없음         |         |          |  |  |   |
|  | 경력(*)   | [ ] 신입 |  | [ ] 경력( 년 개월 이상) |         | [ ] 관계없음 |  |  |   |
|  | 근무예정지(*)  |        | [ ] 사업체 본사 [ ] 사업체 지사 [ ] 소재지와 동일 [ ] 그 밖의 다른 사업체                            |                  |         |          |  |  |   |
|  |   |        | 주소 (우편번호 : )   |                  |         |          |  |  |   |
|  |   |        | 소속산업단지   |                  |         |          |  |  |   |
|  | 고용형태(*)<br>(복수응답가능)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 개월)<br>([ ]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         |          |  |  |   |
|  |   |        | [ ] 시간제 [ ] 파견근로   |                  |         |          |  |  |   |
|  | 우대조건  |        |  |                  |         |          |  |  |   |
|  | [ ] 특정 전공자( ) [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
|  |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리젠테이션<br>[ ] 회계 프로그램 [ ] 기타( ) |        |  |                  |         |          |  |  |   |
|  | [ ] 해외 연수자 [ ] 학점 우수자 [ ] 공모전 입상자 [ ]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자                    |        |  |                  |         |          |  |  |   |
|  | [ ] 외국어 가능자(외국어명 : , 수준 [ ] 상 [ ] 중 [ ] 하)                                |        |  |                  |         |          |  |  |   |
| [ ] 인근 거주자 [ ] 차량 소지자 [ ] 운전 가능자 [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        |  |                  |         |          |  |  |   |
| [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 국가유공자 [ ] 군 전역 간부 [ ] 취업보호 대상자(독립유공자)<br>[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   |        |  |                  |         |          |  |  |   |
| [ ] 장애인 우대 [ ] 장애인만 채용<br>(장애인고용 희망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        |  |                  |         |          |  |  |   |
| [ ] 병역특례대상자([ ] 현역병입영대상자 [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 공익근무요원)  |   |        |  |                  |         |          |  |  |   |
| 그 밖의 희망사항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2중 연두색)80g/㎡]

(2쪽)

|      |   |                                    |  |
|------|---|------------------------------------|--|
|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br>( )원 이상 | 상여금 ( )%<br>( [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 [ ]미포함) |
|      | 근무시간 및 형태   | 평일 : ~ :                           | 1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시간                      |
|      |   | 토요일 : ~ :                          |  |
| 복리후생 |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br><input type="checkbox"/> 통근버스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차량 유지비 <input type="checkbox"/> 중식제공(또는 중식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지원<br><input type="checkbox"/> 자녀 학자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직원대출제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br><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주차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승강기 <input type="checkbox"/> 건물내경사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화장실<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 작업환경 | 드는 힘   |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 ]5-20kg의 물건을 다룸     |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
|      | 서거나 걷기 |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
|      | 듣고 말하기 |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 ]듣고 말하기 중요         |
|      | 시력     | [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
|      | 손 작업   | [ ]큰 물품 조립작업        | [ ]작은 물품 조립작업         | [ ]정밀한 작업            |
|      | 양손사용   | [ ]한손으로 작업          |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 ]양손으로 작업           |

|                                |             |   |                   |
|--------------------------------|-------------|---|-------------------|
| 전형사항                           | 접수 마감일(*)   | [ ]마감일( 년 월 일)  | [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
|                                | 접수방법        |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                                | 전형방법        |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                   |
|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br>[ ]기타( ) |                   |
|                                | 채용 담당자 (*)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팩스  |                   |
|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   |                   |

|            |  |
|------------|--|
| 구인신청 목적(*) | [ ]알선 희망 [ ]외국인 채용 [ ]장려금 대상자 채용 [ ]구직정보 이용 [ ]기타( ) |
|------------|--|

그 밖의 회사소개(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
|----------------------------------|---|
| 구인정보 공유 동의 여부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 제공 동의 [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공 동의 [ ]부동의<br>※ 구인기업의 구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와 공유함에 동의합니다(협약기관은 워크넷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 구인신청 유효기간                        | ※ 15일 이상 2개월 이내로 원하는 기간으로 기재 가능   |
|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
| 워크넷회원 가입 희망 여부 (비회원엔 한함)         | [ ]가입 (아이디: , ) [ ]비가입<br>※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7~10자 이내로 하고, 중복확인을 위해 3개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        |  |
|--------|--|
| 상담 담당자 |  |
| 상담사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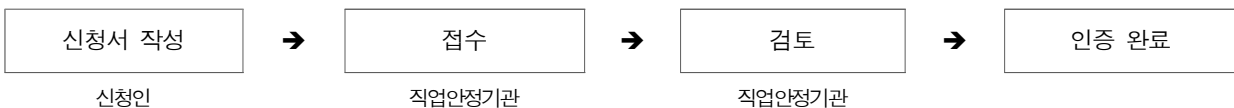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알려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2개월) 중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에 “공개”로 표시하면 워크넷에 구인정보가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6. 워크넷 회원이 되시면 맞춤 인재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구성되며 아이디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워크넷(<http://www.work.go.kr>)로 접속하셔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7. 만일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체명: 출장소·공장·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 ④ 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 자본금: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 ⑥ 채용제목: 채용제목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고, 성별 등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0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 근로기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인턴 또는 수습사원을 고용하려는 경우도 기재 가능합니다.
- ♣ 시간제: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기재합니다.
- ♣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
  - 파견업체는 반드시 “근로자 파견업체” 임을 사업내용란에 명시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 파견근로를 희망한 사람에 한하여 알선됩니다.
4.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을 희망할 경우 표시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접수마감일은 2개월 이내이며, 연장 희망 시 재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휴대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직알선정보 및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로 연락됩니다.
7.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란에 표시합니다.(중복표기 가능)

**처리절차**





(첨부 10)

## 정화조 공기주입 장치 설치 안내문

정화조 오수 펌핑시 악취가 발생하는 부패식 정화조 방류수조에 공기를 주입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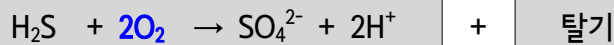
### □ 공기주입장치 개요

○ 장치구성 : 송풍기, 배관, 산기장치, 전기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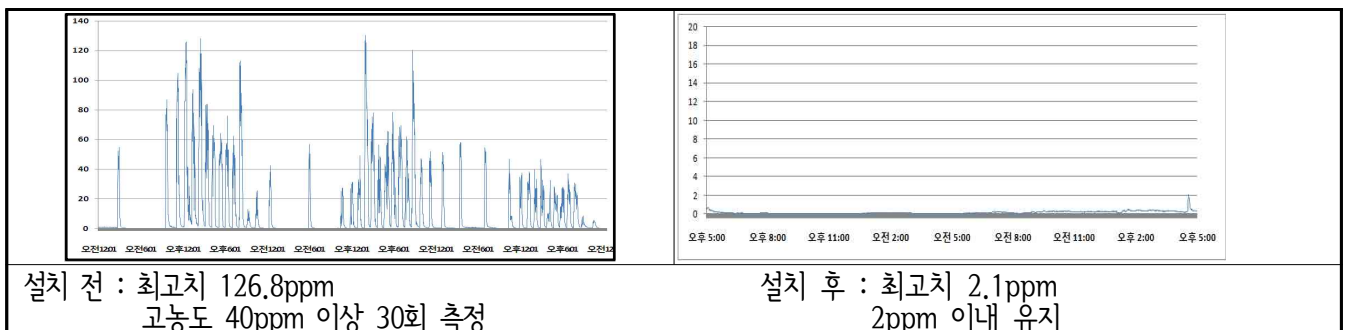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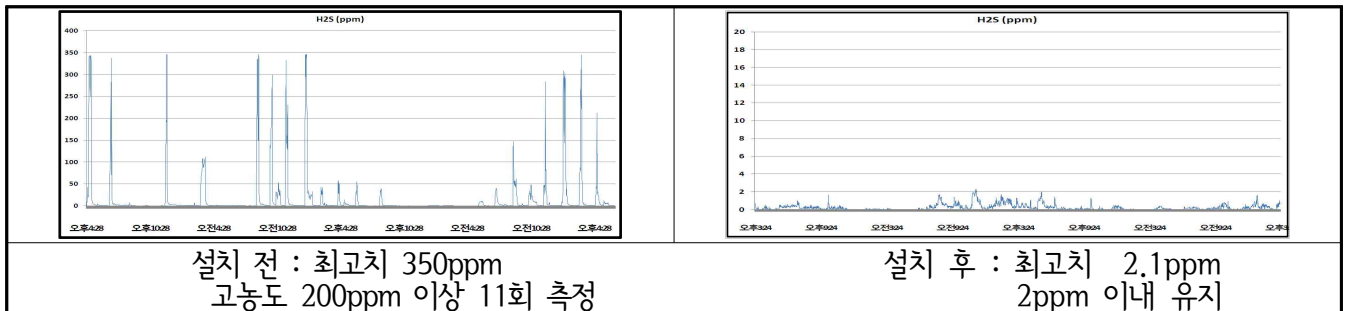


### □ 악취저감효과

○ 저감원리 : 악취물질산화 및 탈기에 의한 악취저감



○ 공기주입전 100~350ppm의 고농도 악취가 보통 0.5ppm, 최고 2ppm 수준으로 순화



□ '10년 현장 적용결과

○ G20 관련 주요시설 주변 공기주입장치 설치 : 62개소

- 공기주입장치 약취저감효과 탁월(96%)

·7개 정화조 황화수소 농도 평균(ppm) : 설치전 32.3 ⇒ 설치후 1.2



□ 공기주입장치 설치비용 및 운영비

| 구 분   | 구 성    | 설 치 비  | 운 영 비  |
|-------|--------|--------|--------|
| 표준모델  | 송풍기 2대 | 300만원대 | 7~12만원 |
| 간소화모델 | 송풍기 1대 | 200만원대 | 4~6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청소행정과(☎ 920-3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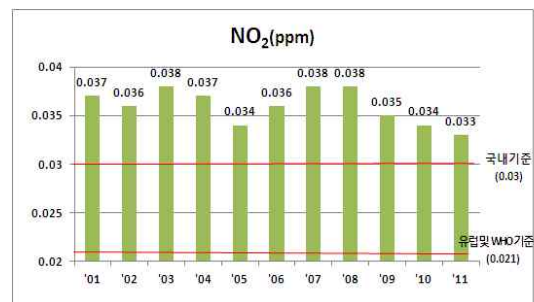
##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설치 권고

### 친환경 보일러란?

- 에너지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에너지 효율 87% 이상,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0ppm 이하인 보일러를 말하며,
- 일반보일러에 비해 난방비 약 15% 절약, 질소산화물 약 50%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서울의 공기도 맑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보일러 보급의 필요성

-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는 여전히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이산화질소란?

자동차,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되고 있고, 고농도의 이산화질소는 폐수중, 폐렴, 폐출혈 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기 중에서 질산을 생성하여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원인은 차량과 함께 대표적인 배출원인 가정용 보일러 때문이며, 질소산화물 (NO<sub>x</sub>)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의 26%(연간 18,427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질소를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등의 차량대책과 함께 친환경 보일러의 확대보급이 시급합니다.

### 건물 신축시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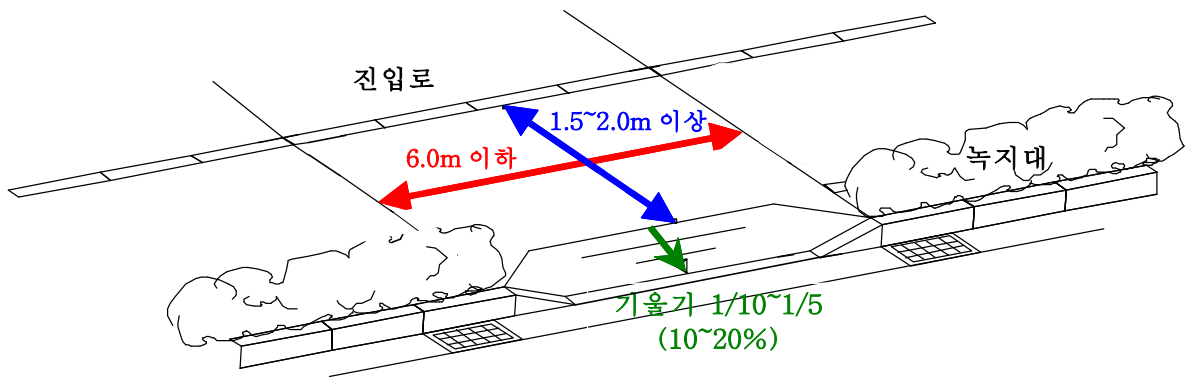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20세대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열효율 87%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서울시내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열효율 87% 이상이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0ppm 이하인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로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

### ● 일반사항

-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재료, 동일 높이로 시공
  - 보도 폭이 4m 이상인 경우 : 2.0m 이상의 수평면 확보
  - 보도 폭이 4m 미만인 경우 : 1.5m 이상의 수평면 확보
- 차량진출입로 경사구간의 경사 범위
  - 차도측 : 1/10 ~ 1/5 (10~20%)
  - 건물측(사유지) : 지형 여건에 따라 설계·시공
- 출입시설의 너비는 6m 이내로 시공
-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cm로 시공. 두께 150mm 이상의 낮춤 경계석 사용(기존 100mm 사용시 잦은 파손 발생)
-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하여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 또는 사괴석 시공
-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침하, 깨짐 등) 방지를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시공
- 차량진출입로에 접근하는 보도에는 점형 점자블록(경고용)을 설치하지 않음. 단, 선형(유도)블록은 관련지침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  
(차량진출입로는 차량이 보도를 빌려 쓰는 장소이므로 항상 보행인이 우선임)



[그림 1] 차량진출입로 평면도

● 시공 주의사항

- 표층 재료 선정 및 재료별 표준단면은 [표 1]에 의해 결정
- 블록포장 시행시 블록 두께(80mm) 준수 및 포장하부 보강
- 충격하중에 취약한 블록(점토바닥벽돌, 타일블록, 도자블록 등 소성 제품) 사용 자제
- 블록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및 시공 매뉴얼」에 의함
- 아스콘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함

[표 1] 차량진출입로 표준도

| 구분                | 차량 진출입로(평지구간)  | 차량 진출입로(경사구간)                             |
|-------------------|--|---|
| 블록<br>포장          |  | <p>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 등)<br/>또는 사피석 사용</p> |
|                   | <p>▷ 교통 조건 : 주차면수 20면 미만 업소</p> <p>▷ 모래 두께 : 다져진 후의 두께(일반보다 40mm, 차량진출입로 30mm)</p>   |   |
| 아스콘<br>포장         | <p>표 층 : 아스콘 포장 50mm</p> <p>기 층 : 시멘트 콘크리트 150mm(와이어 매쉬 포함)</p> <p>※ 기층과 표층 사이 텍 코트 시공</p> <p>※ 경사구간은 붉은색 계열로 표면 처리</p>          |   |
|                   | <p>▷ 교통 조건 : 주차면수 20면 이상 업소 또는 주유소</p>   |   |
| 시멘트<br>콘크리트<br>포장 | <p>표 층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0mm</p> <p>기 층 : 골재 기층 150mm</p> <p>※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시공</p> <p>※ 경사구간은 붉은색 계열로 표면 처리</p> |   |
|                   | <p>▷ 교통 조건 : 주차면수 20면 이상 업소 또는 주유소</p>   |   |

● 블록형상 및 포설패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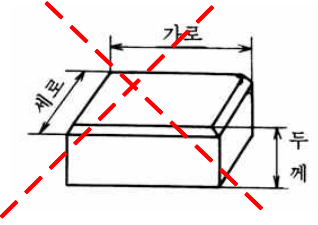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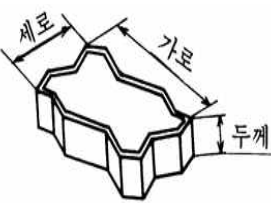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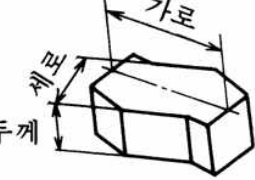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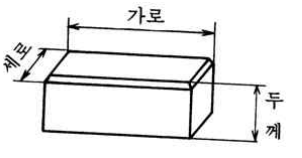
-블록형상 : 하중전달률 0.5 이상 확보되도록 아래 기준 준수

$$\frac{\text{블록의 장변}}{\text{블록의 두께}} \leq 4.0 \dots\dots\dots(1) \quad \frac{\text{블록의 측면적의합}}{\text{블록의 상부면적}} \geq 1.4 \dots\dots\dots(2)$$

단, 단면 $\geq$ 50mm, 두께 $\leq$ 1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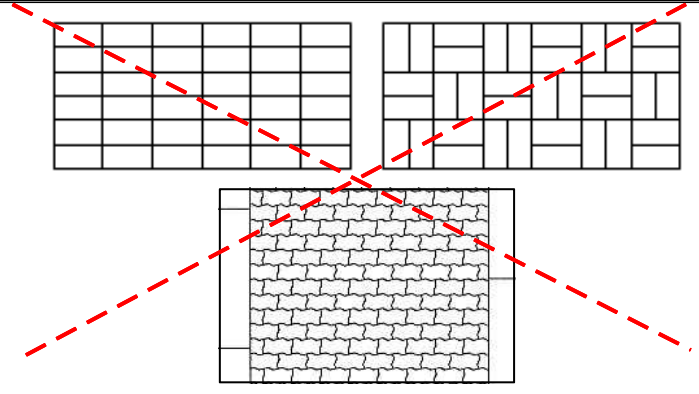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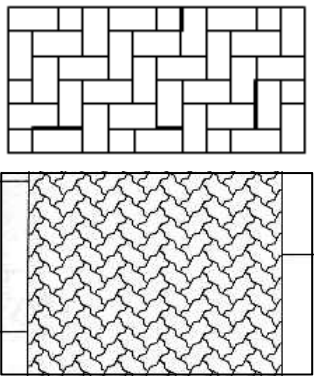
-블록형태 : 블록의 맞물림(Inter locking)이 우수한 이형블록(U블록, S블록 등) 및 장방형 I<sub>2</sub>블록 사용

[표 2] 사용 가능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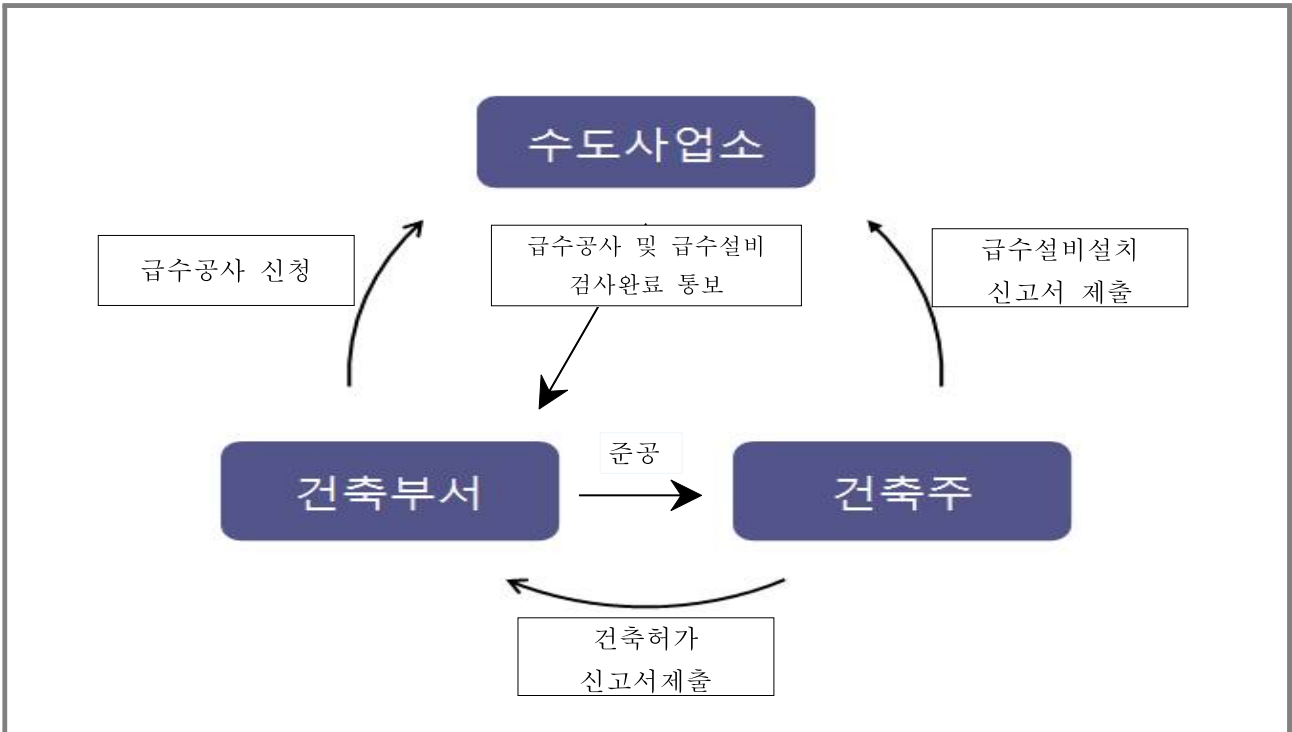
| O 블록   | I 블록, U 블록   |   |  |  |
|--|--|---|--|--|
|  <p>O 블록(정사각형)</p> |  <p>U 블록</p> |  <p>S 블록</p> |  <p>I<sub>2</sub>블록(장방형)</p> |  |
| (사용 X)   | (사용 O)   |   |  |  |

-블록 포설패턴 : 일반보도구간은 어떤 패턴을 사용해도 좋으나, 차량진출입로는 하중전달력이 좋은 지그재그 패턴 사용

[표 3] 사용 가능 블록 패턴

| 일자 패턴, 겹이음 패턴 등   | 지그재그(45° 또는 90°) 패턴   |
|---|---|
|  <p>(사용 X)</p> |  <p>(사용 O)</p> |

## 급수설비 검사관련 업무 흐름도



① 건축허가 신고서 제출 (건축주 ⇒ 건축부서)

- 건축부서에서 건축주에게 급수설비 검사제도 안내

② 급수공사 신청 (건축부서 ⇒ 수도사업소)

③ 급수설비 설치 신고서 제출 (건축주 ⇒ 수도사업소)

- 급수가 필요한 시점 30일 이전에 수도사업소에 신청

④ 급수설비 검사 (수도사업소)

- 검사기준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나 제품 사용  
저수조 설치시 기준 준수

- 검사 방법 : 급수설비의 품목, 재질 및 수량

급수설비 설계도서, 급수설비 공사방법 및 시공자  
검사기준의 증명자료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⑤ 급수공사완료 통보 및 급수설비검사 결과 통보 (수도사업소 ⇒ 건축부서)

(첨부 14)

[별지 제2호의2 서식]

| <b>급수설비 설치 신고서</b>   |  |                            |       |            | 처리기간 |
|--|--|----------------------------|-------|------------|------|
|  |  |                            |       |            | 10일  |
| <b>설<br/>치<br/>자</b>   | ①사업자명                                  |                            |       |            |      |
|  | 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 ④주소                                    |                            |       |            |      |
|  | ⑤ 해당업종(보유<br>시) 및 사업자<br>등록번호          |                            |       |            |      |
| <b>설<br/>치<br/>신<br/>고</b>   | ⑥ 급수설비<br>목록 및 물량                      | 관류                         | 재질:   | 평균관경: ∅ mm |      |
|  |  | 저수조 및 옥상물탱크<br>(1) 규격 및 재질 |       |            |      |
|  | 그 외 품목<br>(1) 품목명 및 재질<br>(2) 품목명 및 재질 |                            |       |            |      |
|  | ⑦ 설치위치                                 | 시·군·구 ( )로 번지              |       |            |      |
| ⑧ 공사착공<br>연월일  | 년 월 일                                  | ⑨ 공사준공<br>예정일              | 년 월 일 |            |      |
| <p>「수도법」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br/>신고인 (서명 또는 인)<br/>( ) 수도사업소장 귀하</p> |  |                            |       |            |      |
| 구비서류<br>급수설비 시공도면(1/200)<br>위생안전기준 등 증명서류  |  |                            |       | 수수료        |      |
|  |  |                            |       | 없음         |      |



## 건축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기준

| 번호 | 방법시설물 설치 기준  |
|----|--|
| 1  | <p>▶ 현관 출입문 침입방어를 위한<br/>① 주 Key, ② 보조 Key, ③ 안전 고리 설치</p> <p>주거지 주 출입구인 현관 출입문에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 장치 설치 필요</p>   |
| 2  | <p>▶ 건물 외벽<br/>① 가스배관 매립(ㄷ자 홈) ② 가시형 철조망 설치</p> <p>외벽(가스배관 등)을 통한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거</p>   |
| 3  | <p>▶ 건물 입구<br/>① 출입문 설치, ② 조명 설치</p> <p>침입 방어를 위하여 Key가 설치된 건물 출입문 설치/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하여 주변을 밝게 함으로써 침입 심리를 억제</p> <p>※ 조명은 80Lux이상 :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의 경우 약30W 정도 사용하면 됨 / 1Lux는 촛불 1개를 1m 거리에서 측정한 밝기</p>                                       |
| 4  | <p>▶ 1층 외벽 창문에 방범창살 설치</p> <p>1층의 경우, 별다른 저항 없이도 외벽 창문을 통해 주거 내로 침입이 가능하므로 방범 창살 설치를 통하여 침입을 방어</p>  |
| 5  | <p>▶ CCTV 설치<br/>① 건물 현관 입구 1개 이상<br/>② 주차장 1개 이상<br/>③ 각 층간 사이(또는 각층 복도) 1개씩<br/>④ 건물 주변 사각지대 1개 이상<br/>⑤ 엘리베이터 내부 1개 이상<br/>(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만 해당, 없는 경우 설치한 것으로 간주)</p> <p>CCTV는 범죄예방 및 사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심리 억제 효과</p> |

(첨부 16)

## 안전 점검표(건축공사장)

공사장명: \_\_\_\_\_

점검일: . . ( )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 조 치 계 획 |
|--|---------|------------|---------|
|  | ○,×     | 내용(위치, 상태) |         |
| <b>▪ 일반사항</b>  |         |            |         |
|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         |            |         |
| ·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         |            |         |
| · 굴착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보통토사 1:1~1:1.5, 암반<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         |            |         |
|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여부   |         |            |         |
|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         |            |         |
| · 공사 시행지침 준수여부<br>※ 시방서 및 지자체 규정 등                                   |         |            |         |
| <b>▪ 사면붕괴</b>  |         |            |         |
| · 부석제거 여부  |         |            |         |
|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         |            |         |
| · 산마루 측구 설치여부  |         |            |         |
| ·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            |         |
| <b>▪ 흙막이 지보공</b>   |         |            |         |
|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여부   |         |            |         |
|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여부   |         |            |         |
| · 배면토사 충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         |            |         |
|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            |         |
| ·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         |            |         |
|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            |         |
| <b>▪ 지반 침하</b>   |         |            |         |
| ·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            |         |
|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여부  |         |            |         |
| · 중량정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여부                                       |         |            |         |
| ·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이상 유무                                       |         |            |         |
| ·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         |            |         |
| <b>▪ 구조물공사</b>   |         |            |         |
| ·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br>- 슈미트해머 등 비파괴 검사 실시                    |         |            |         |
| ·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br>- 외부감시자 및 안전장비(마스크) 비치, 착용여부<br>- 소화기 비치여부 |         |            |         |
|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br>-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여부<br>- 수평보강재 등 전용철물 사용 여부    |         |            |         |

점 검 자 : \_\_\_\_\_

# 안전 점검표(축대·석축·옹벽 등)

옹벽위치: \_\_\_\_\_

점검일: . . ( )

| 점 검 항 목                            | 점 검 결 과 |            | 조 치 계 획 |
|------------------------------------|---------|------------|---------|
|                                    | ○, X    | 내용(위치, 상태) |         |
| <b>▪ 기초지반</b>                      |         |            |         |
|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            |         |
| · 침하 발생 유무                         |         |            |         |
| <b>▪ 콘크리트 옹벽</b>                   |         |            |         |
|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            |         |
|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            |         |
|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            |         |
|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            |         |
| <b>▪ 보강토 옹벽</b>                    |         |            |         |
|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            |         |
| · 블록(판넬)유실 여부                      |         |            |         |
|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            |         |
| <b>▪ 석축</b>                        |         |            |         |
|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치돌) 발생의 여부          |         |            |         |
| · 견치돌 유실 여부                        |         |            |         |
| · 견치돌 이격 발생 유무                     |         |            |         |
| <b>▪ 개비온 옹벽</b>                    |         |            |         |
| · 채움재 유실 여부                        |         |            |         |
|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            |         |
| <b>▪ 주변시설</b>                      |         |            |         |
|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            |         |
|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            |         |
| ·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         |            |         |
| · 도로용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            |         |
|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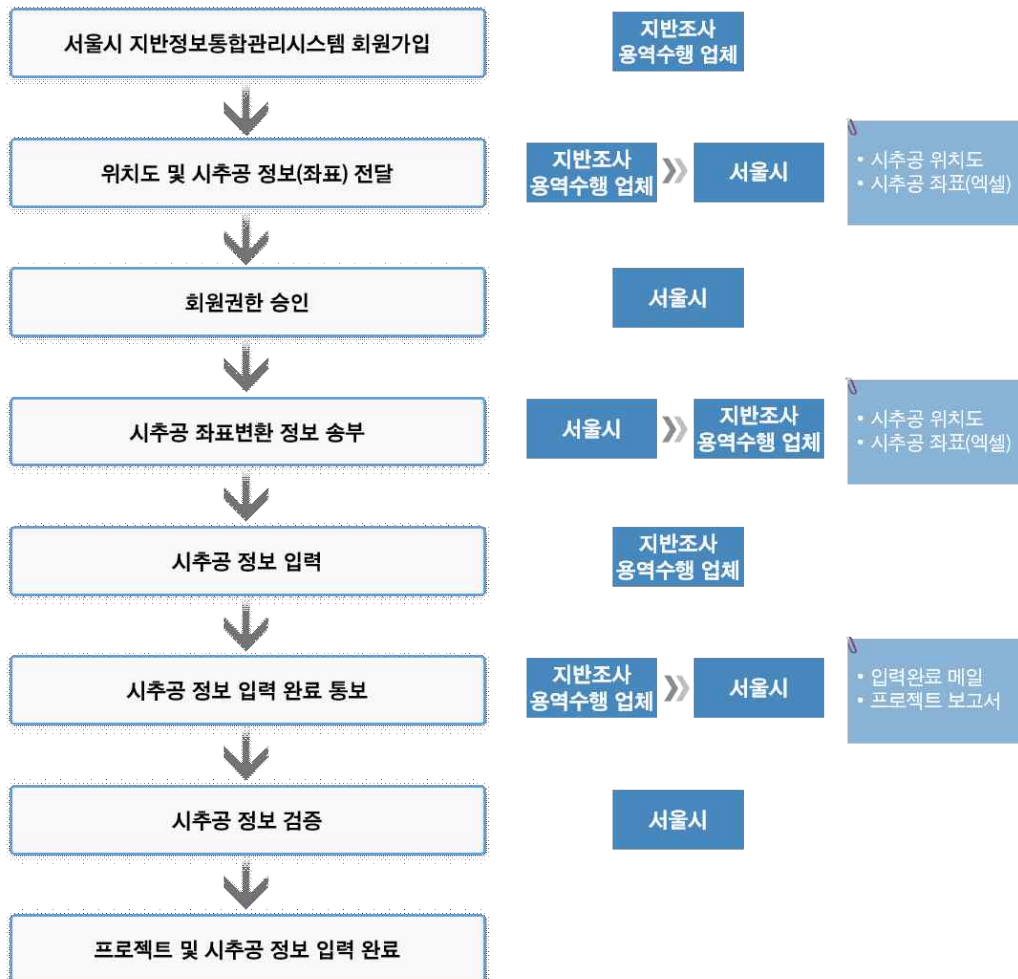
점 검 자 : \_\_\_\_\_

(첨부 17)

##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안내) -

【문의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 2133-2852】

- 대 상 : 지반조사보고서
- 등재자 : 지반조사 자(실제 지반조사를 실시한 자)
- 시 기
  - 건축심의 시 : 굴토심의 신청시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 사용승인 시 : 건축물 준공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 시스템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 사용자메뉴얼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커뮤니티-자료실 참조
- 회원가입 및 등재절차
  - ID&PW(지반조사 자) → 승인(공간정보담당관) → 자료등재(지반조사 자)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
|              |                  |  | 14 일    |
| 발주자<br>(건축주) | 성명(기관<br>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                  |  |         |
| 공사의 종류       |                  | 연면적/규모(층)                                  |         |
| 건축허가번호       |                  |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준공예정일자                                     |         |
| 설<br>계<br>자  | 상 호              | 정보통신 관련 분야<br>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br>(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전 화 번 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 도급계약일자           |  |         |
| 시<br>공<br>자  | 상 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전 화 번 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 도급계약일자           |  |         |
| 감<br>리<br>자  | 상 호              | 정보통신 관련 분야<br>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br>(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전 화 번 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 도급계약일자           |  |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br>제출서류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수수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설계자 등록(신고)증   | 없 음 |

#### 작성 방법

-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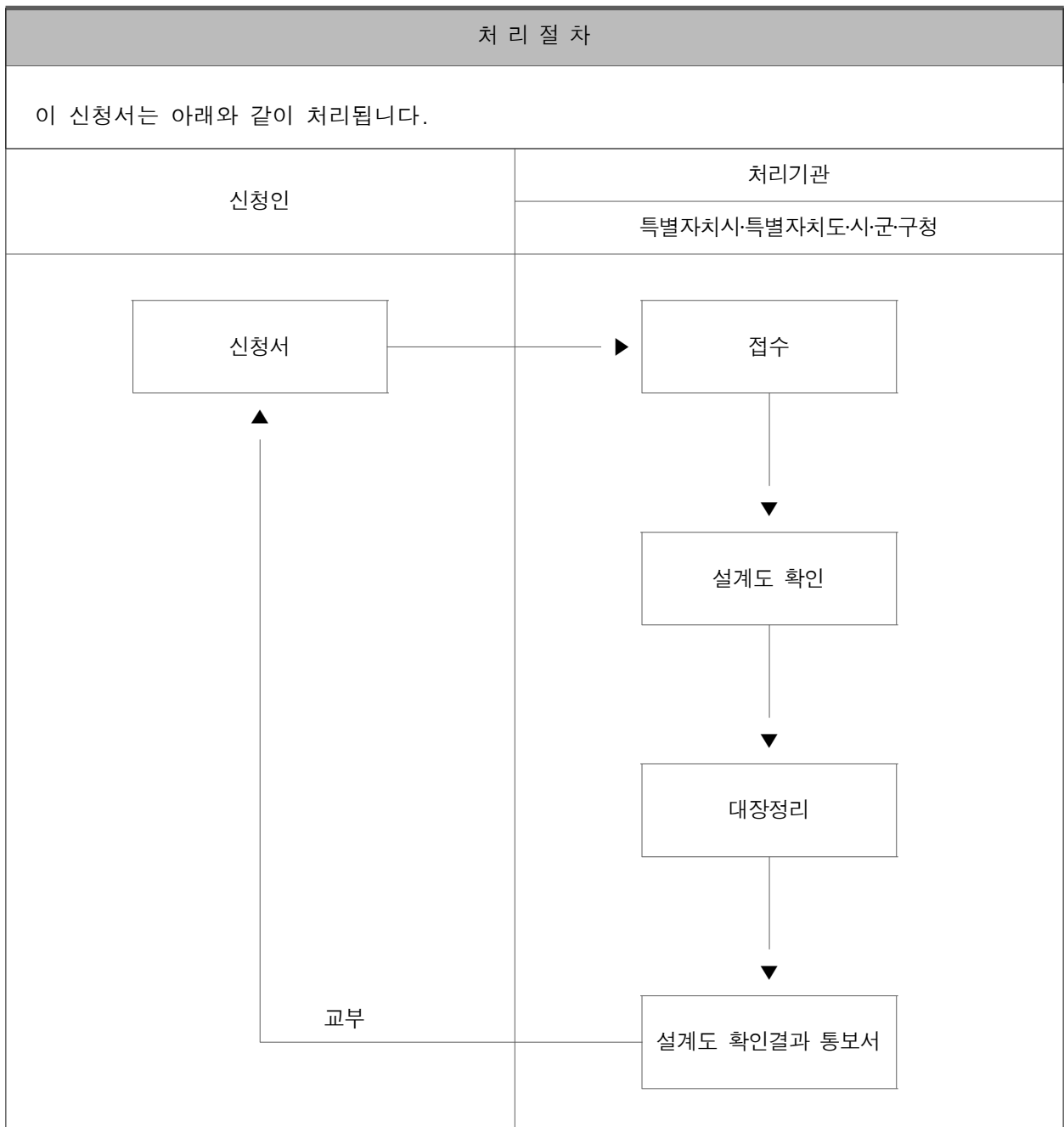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하수분야 허가조건

## 【일반사항】

1. 사업지내 하수시설은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 관리하는 배수설비시설에 해당되므로 공사 시행 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토록 조치.
2. **[붙임1 참조]** 사업지내 우·오수관(배수설비)을 공공 우·오수관으로 반드시 분리시공 연결하고, 관 접합 시 접합부분은 천공기 및 절단기를 사용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단지관(새들포함)으로 연결시공하여 준공시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제출할 것.
3. **[붙임2 참조]** 반 지하주택 건축물은 침수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역지번, 수중 자동펌프 등)을 설치하고,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제출할 것.
4. 공사로 인한 토사, 레미콘 세척수, 시멘트 풀, 인조석 물갈기 시 발생하는 폐수, 이토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입 시 즉시 준설을 실시할 것.
5. 우·오수관로 및 빗물받이 연결관 천공, 접합상태 및 공사로 인한 잔재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내에 부설된 하수관거의 상류측으로 20m, 하류측으로 50m 구간에 대하여 관 내부를 CCTV 촬영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제출할 것.
6. 공공도로상 공공용 맨홀 설치 시 인버트를 설치하고,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자를 표기한 밀폐제품을 사용.
7. 신설 또는 개량하는 공공하수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무상 귀속 됨.
8. 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주변 공공하수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 부담 즉시 원상 복구할 것.
9.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은 공제하므로 준공 전 정산을 위하여는 “기존오수발생량 산출근거, 기존건축물 멸실대장 등” 증빙서류를 준공 전에 제출할 것.
10. 기타 하수도 공사 시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및 “하수도표준도”에 의거 시공할 것이며, 미 협의된 공공하수시설물이 저촉될 경우 반드시 우리 구 치수과와 별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할 것.
11. 사업지내 예상치 못한 공공하수시설물이 존재할 경우, 이설을 실시하고 이설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구 치수과와 별도 협의할 것.
12. 건축물을 철거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배수관은 하수도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사고 및 토양·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하고 전,중,후 사진을 제출할 것.
13. 해당 건축물 공사장에서 유출지하수가 월60㎥ 이상 발생 시는 우리구 치수과 기전관리팀(☎2241-3640)에 유출 지하수 발생신고를 할 것.
14. 지질(지반)조사를 위하여, 굴착지름 75mm이상으로 토지굴착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구 치수과 기전관리팀(☎2241-3640)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를 할 것.

■ 공공하수관거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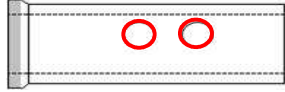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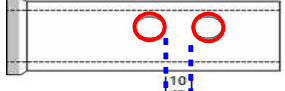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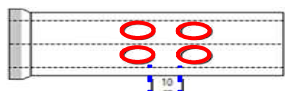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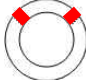

○ 공공하수관에 연결 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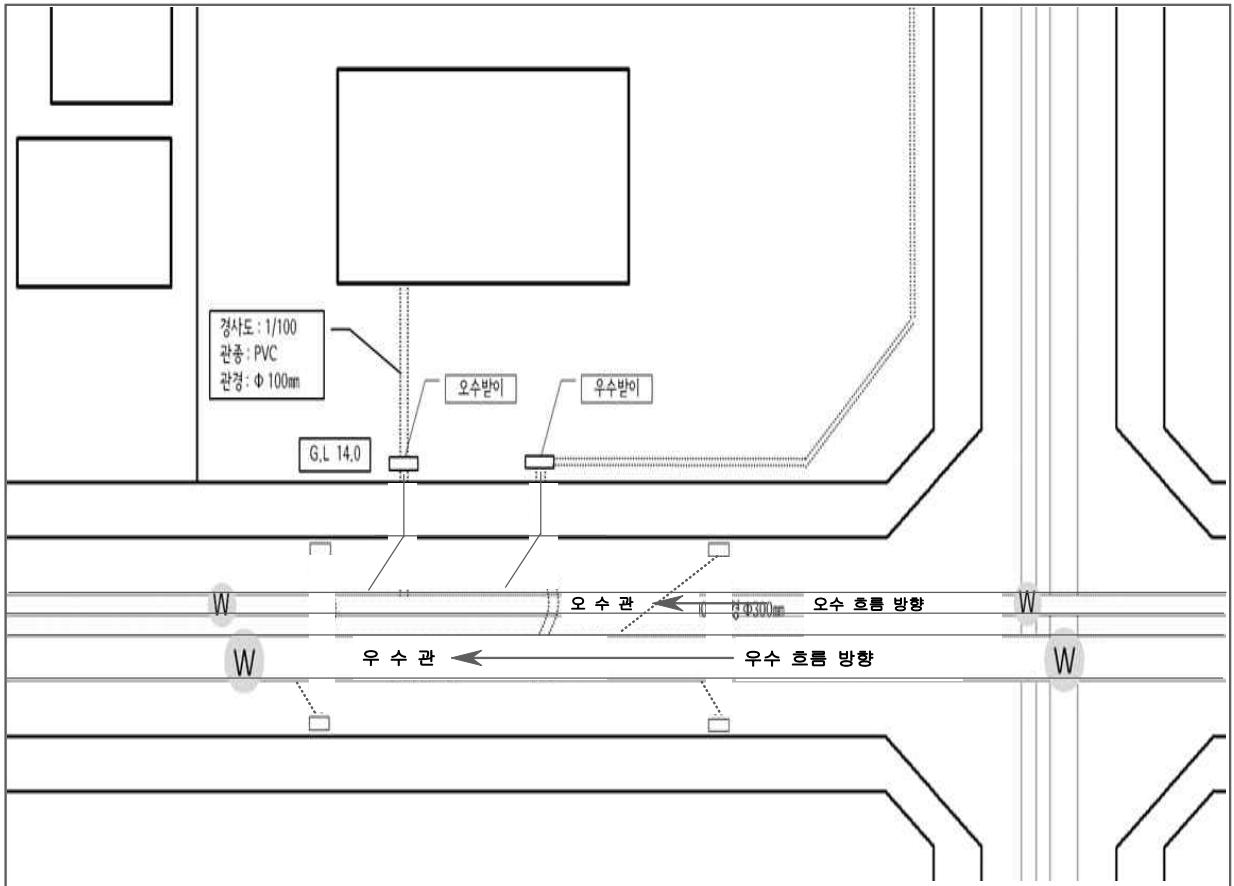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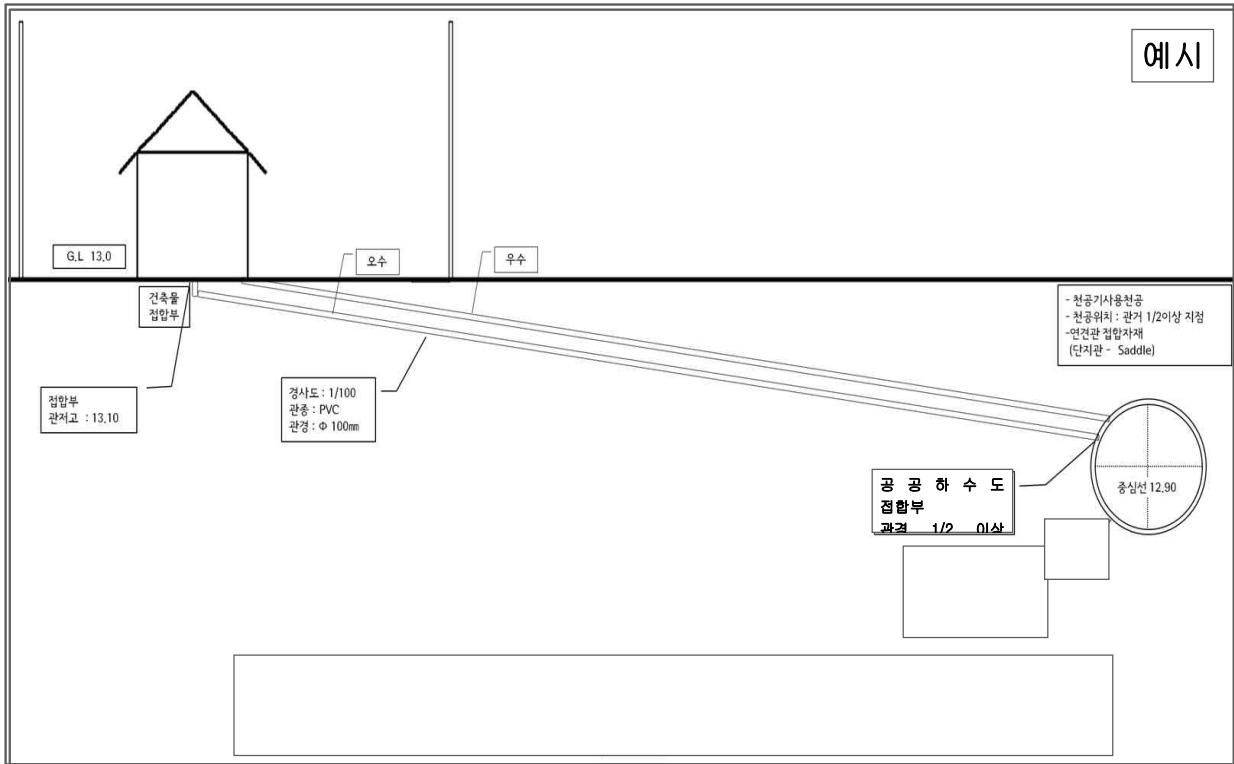
○ 천공 후 연결 시에는 단지관(연결용 자재)를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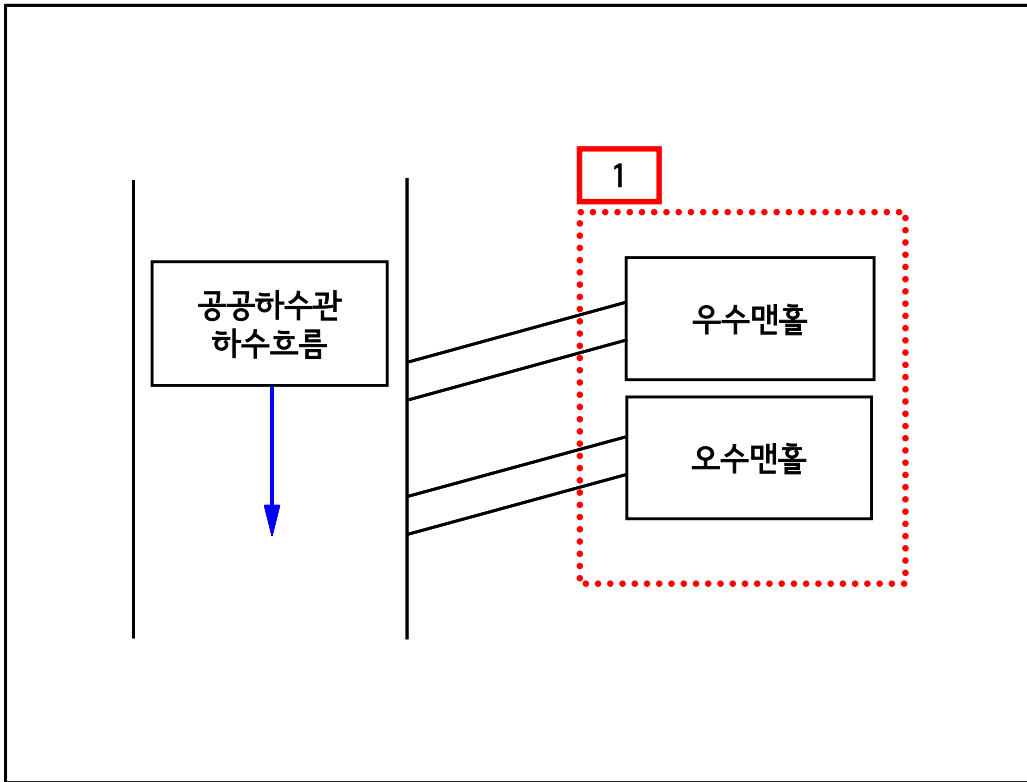
■ 천공방법

| 기 준   | 천 공   |
|---|---|
| 공공하수관거에 천공 시 공공하수관거 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천공<br>※ 관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 금지               | [O] [X] [X] [X]   |
| 공공하수관거 한본(흙관의 경우 2.5m)에서 단일면에 2공까지만 천공  |  |
| 2공 천공시 천공간격은 1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
| 공공하수관거 한 본에서 양면에 2공씩 천공 시에는 동일 선상에서는 천공금지                                       |  |
|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300mm인 경우 한 본에서의 양면 천공금지(단일면에서는 2공까지만 천공 가능)                        |  |
|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450mm인 경우 한본에서 연결관 관경 100mm 까지만 양면 천공 (관경이 100mm을 넘어서는 경우 양면 천공 금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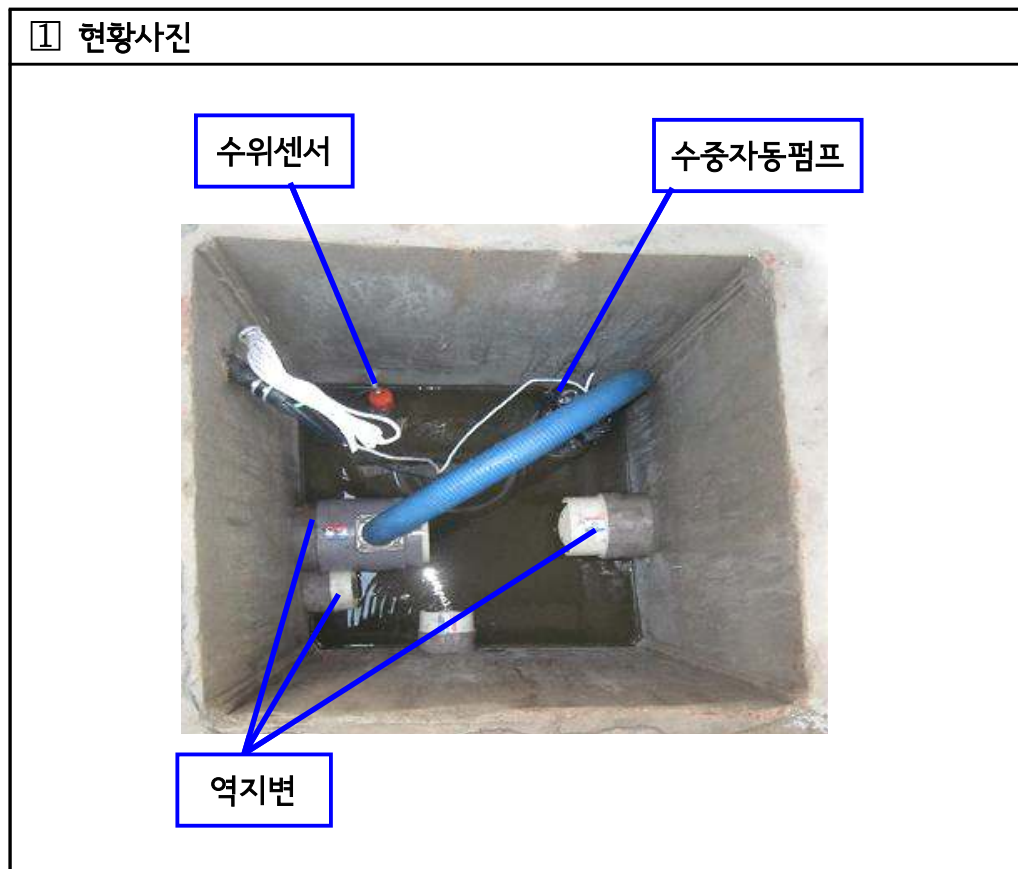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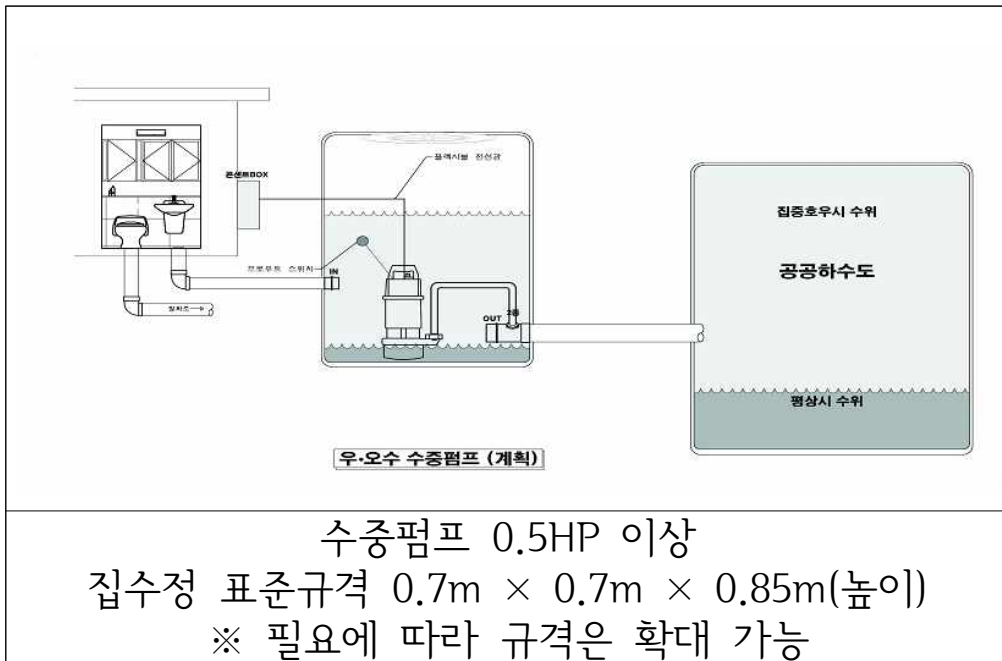
■ 침수방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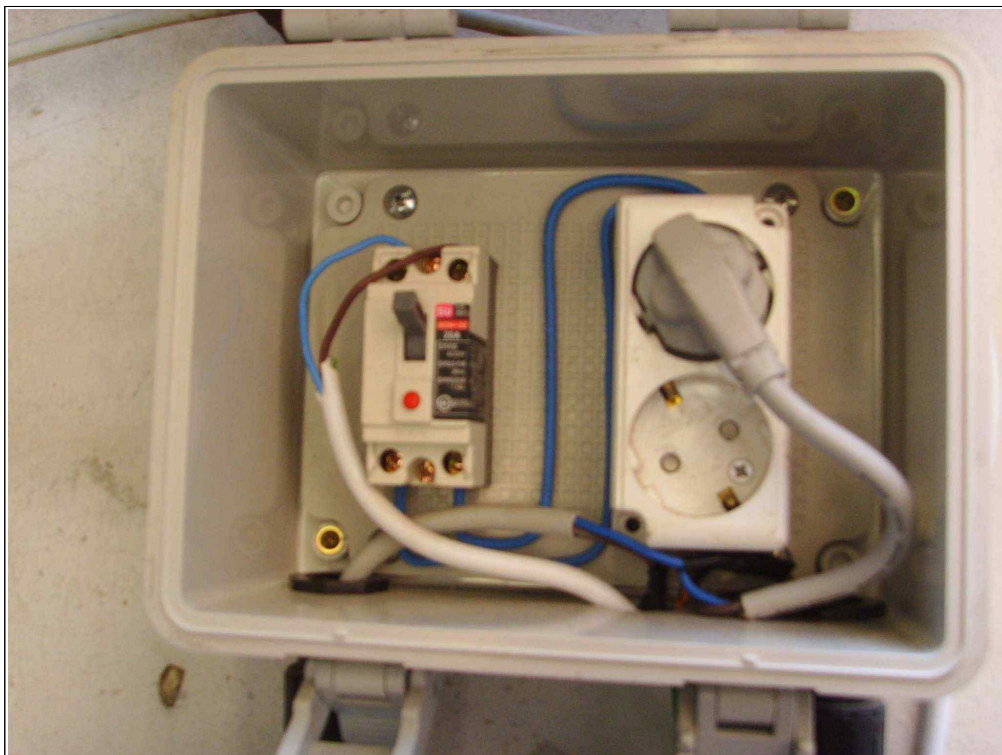
① 현황사진



○ 표준 집수정 규격 및 수중펌프, 배관도



○ 전원조작 판넬



전원 판넬  
 (누전차단기, 컨트롤박스, 노출형 콘센트, 접지동봉, 접지케이블 구성)

○ 철판 집수정 덮개 설치



**【유출지하수 활용 권장사항】**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활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시설 : 건축물 청소 및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

- 활용 시 이점 : 유출지하수 활용 요금은 상수도의 13%로 경제적임.

· 유출지하수 요금 : 톤당 170원(하수도사용료)

· 상수도 요금 : 톤당 1,280원(물이용부담+상수도사용료 + 하수도사용료)

→ 1,290원

※ 물이용부담 160원, 상수도사용료 680원, 하수도사용료 440원

→ 170원

**【유량계 설치 안내】**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의해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구청 지하수담당부서(안전치수과 기전관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분야 허가조건

1. 사업부지 인접 공공도로(보도, 차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착공 전에 **초기점검**(균열, 침하, 파손 등)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중차량 통행 및 공사로 인해 손괴(損壞)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공사 **준공 시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공공도로(보도, 차도) 및 도로시설물이 손괴될 경우에는 우리 구(도로시설과)와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의 파손, 침하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공사 1개월 전까지 **시공 상세도**를 첨부하여 우리 구(도로시설과)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공공보도를 정비 및 굴착복구(이하 ‘보도공사’ 라 함)할 경우에는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안전 펜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공사 착공 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확인 후 시행)
  - 보행통로 10m이상~30m미만 : 1인, 30m이상 : 2인
  - 단, 교차로, 학교주변 등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시보행로 연장에 따른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인원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운영기관 : 한국건설안전도우미 협동조합([www.한국건설안전도우미.com](http://www.한국건설안전도우미.com))]
4. 보도공사 시에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을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평탄성 확보, 줄눈폭 유지, 단부 및 맨홀·가로 등주 등 시설물 주변 정밀 마감, 1/2이하 조각블록 사용 금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등 내구성이 있고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5. 공공도로를 정비 및 굴착복구(이하 ‘도로공사’ 라 함)하는 경우에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능 인력을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를 준수하여 품질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기존 포장공사(코어채취) 후 포장두께를 결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도공사 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이 평탄성 확보 후 임시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7. 6항에서 임시복구 완료 후에는 임시복구 구간에 복구완료 예정기간 및 임시포장임을 명시하여 임시복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아래의 도로공사(보도, 차도) 구간에는 공사실명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공사실명제)
  - (1) 보도포장 : **연장 100m이상 전폭 보도 정비 시에는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화강석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명·공사구간·공사기간·시공사·감독자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규격 : 가로 30cm × 세로 30cm)을 설치**

- (2) 차도포장 : **연장 100m 이상 굴착복구공사와 도로포장이 주 공종인 공사**(포장면적이 30a인 공사 등)는 공사구간의 **시·종점 가로등에** 공사명·공사기간·시공사·제품생산회사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규격 : 가로 10cm×세로 15cm)을 설치**
9.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예정일이 겨울철(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일 경우, 11월 말까지 도로(보도 포함)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우리 구(도로시설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보도공사 Closing 11)
10. 보도공사 시공 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10%이상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조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시공사와 공사 관련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1.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연결)를 위해 도로(차도, 보도)를 굴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굴착공사가 한번(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1) 도로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도로굴착 및 복구 시기, 공사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굴착행위 2개월 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도로시설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이후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면으로부터 0.5미터**입니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2. 보도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도로시설과)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제10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12항에 의한 **차량출입시설**은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도로시설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4. 가각부, 턱낮춤부, 횡단보도, 건축후퇴 부분에는 우리 구(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필요시 차량 진·출입 방지를 위한 차량출입 방지시설(볼라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5. 건축물 신·개축에 수반하여 비 관리청(건축주)이 조성하는 보도에 대하여 건축주가 사업시행 초기단계(**설계단계**)에 자율적으로 **보도입양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보도입양제**)  
 ※ 보도입양제 : 건축주가 보도포장 유지보수 및 재포장, 쉼터·화단 조성, 보도상 청소 및 제설 등을 시행(단, 보도상 보행자 사고 등 처리는 도로관리청에서 수행) 하는 제도
16. 보행이 편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붙임 참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을 제외한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 확보**
  - (2) 가로시설물은 서울시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배치도를 작성**하여 우리 구(도로시설과 및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3) 보도 위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보행 연속구간에 턱, 돌출시설물이 없도록 해야 함
  - (4) 보행편의를 위해 건축물과 보도의 단차를 줄이고, 보도의 **횡단경사는 2% 이하** 준수. 다만, 지형상황 및 주변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5) 횡단보도 턱 낮춤은 횡단보도 **전체 폭 턱 낮춤**하고, 점자블록(점형)은 **턱 낮춤 전체구간에 설치**하며, 턱 낮춤 부의 보도와 차도의 접속 부는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단차 1cm 이하**로 설치
  - (6) 한전 지상기기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위치선정 등에 대해 한전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되, **사유지내 설치를 우선 검토** 시행하고 사유지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면도로·공원의 유휴 공간·띠 녹지 등에 배치
17. **지하수위 이하 깊이로 굴착**할 경우,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등으로 인하여 굴착공사 인접 공공도로(보도 및 도로)의 **침하, 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 (1) **1일 2회** 공사장 주변 도로(보도 및 차도)에 이상이 없는지 **순찰**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해야 함. 순찰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펜스 설치 등 응급조치 및 우리 구 건축허가부서와 도로부서 등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2) 공사 착공 전에는 지반변동을 점검할 수 있는 **계측기**(지하수위계, 기타 필요 계측기) 및 **지반탐사계**(GPR 등)를 설치(또는 배치)하여 **초기치 측정 후 착공**하여야 함
  - (3) 공사 중에는 분기별로 계측내용을 분석하여 계측보고서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함
18. 집중호우 및 장마기간에는 **공사시행여부**에 대하여 우리구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급수분야 허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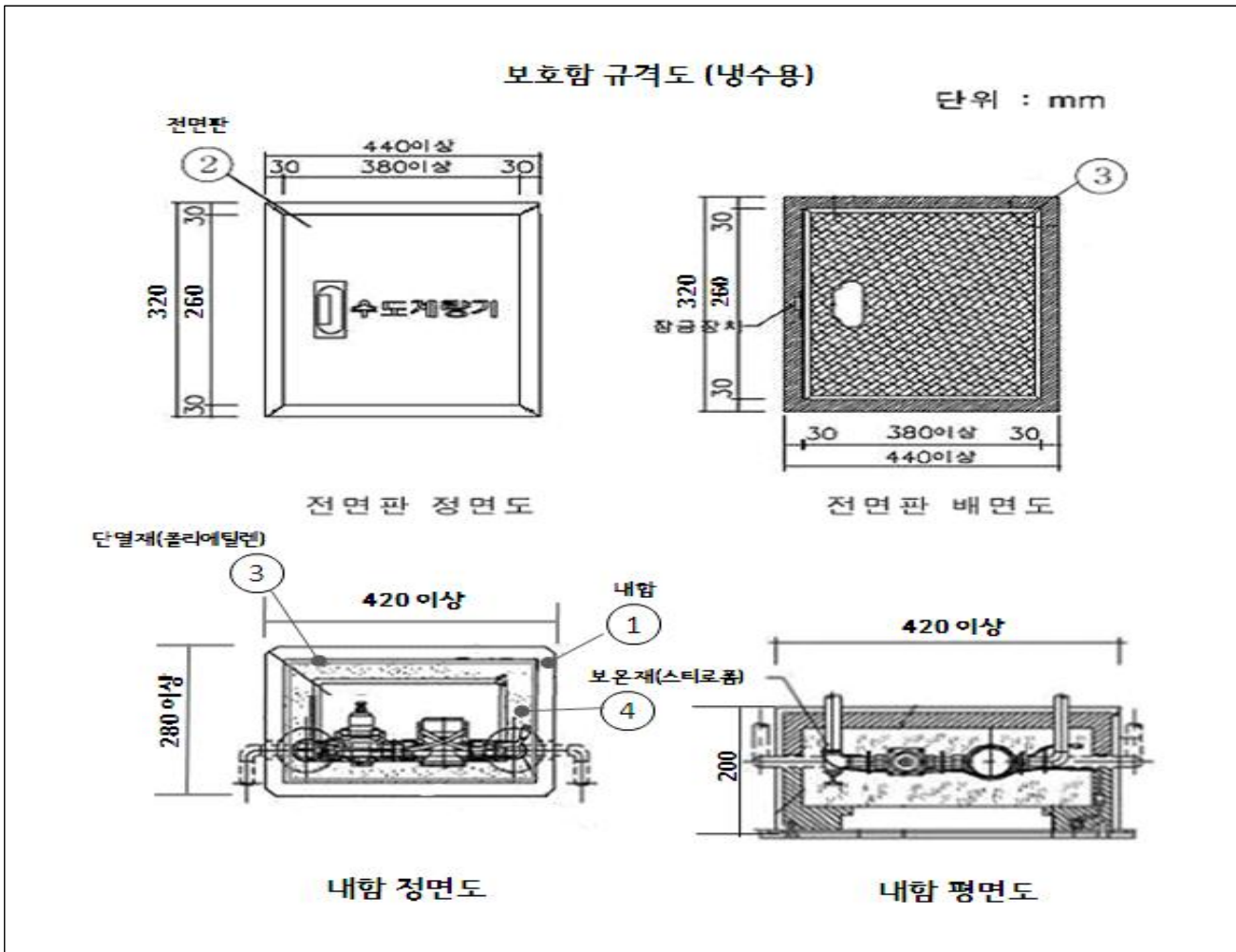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 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 ②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청소 등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수압으로 지상5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4.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는 붙임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가압직결급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6. 인입급수관 구경은 가정용 40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 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0.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 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보호함(이하 “보호함” 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mm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82)를 부착하여야 한다.
  -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 아. 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종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 카. 수도계량기에 (4±1) °C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함안에 넣은 후 주위 온도 (-20±1) °C이 되도록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 되지 않아야 한다.
-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 (공동 주택용)수도계량기보호함』에 준용한다.
13. 주방 개수대(싱크대)에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냉수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권장한다.
14. 급수장치(수도계량기) 폐전 시에는
- 가. 급수장치(수도계량기)에 대한 폐전 신청은 수요가 또는 사업 시행자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사업시행자는 폐전 신청 시 해당 수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체납금 및 잔량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업시행자는 누수 없이 안전하게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철거한 수도계량기를 반납 하여야 한다

<부도1> 보호함의 설치예



【 보호함 제작예 】



## <참고자료>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 구 분 | 인증대상       |
|-----|------------|
| 수도관 | 주철관류(鑄鐵管類) |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 구 분 | 인증대상      |
|-----|-----------|
| 수도관 | 주철관류      |
|     | 그 밖의 금속관류 |
|     | 합성수지관류    |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 구 분                    | 인증대상                                       |
|------------------------|--|
| 수도관                    | 주철관류                                       |
|                        | 그 밖의 금속관류                                  |
|                        | 합성수지관류                                     |
| 기계 및 계측·제어용<br>자재 및 제품 | 밸브류<br>펌프류<br>수도꼭지류<br>유량계류(流量計類)<br>수도미터류 |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 구 분                          | 인증대상  |
|------------------------------|---|
| 수도관                          | 주철관류  |
|                              | 그 밖의 금속관류   |
|                              | 합성수지관류  |
| 기계 및 계측·제어용<br>자재 및 제품       | 밸브류<br>펌프류<br>수도꼭지류<br>유량계류<br>수도미터류  |
| 도료(塗料) 등 그 밖의<br>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br><br>그 밖에 음용(飲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 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